

03. 독도의 경제지리



현재 하이드레이트는 개발기술이 초보단계로 러시아를 제외하고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독도 북쪽의 한국대지 사면에서는 인산염암이 발견되었다. 함량이 30%나 되고, 우라늄광보다 30배나 많은 우라늄(120ppm)과 바나듐(17~300ppm)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法と対話による解決を目指して

역사적 근거

역사적 기록: 일본은 고대부터 다케시마를 자국의 영토로 인식해 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제시되는 역사적 기록들은 논리적 오류와 자료 조작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인 역사적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역사적 근거

영토 편입: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를 강제 편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당시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지리적 근거

근거 부족: 일본은 다케시마가 오키나와 섬들과 밀접한 지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명확한 지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리: 실제로 다케시마는 울릉도에 훨씬 가까우며, 지형적 · 해양 지질학적 특징 또한 울릉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국제법적 근거

무주지 논리: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였기 때문에 영토 편입이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무주지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실효적 지배라는 국제법 원칙에 따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됩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국제법적 근거

평화선 선언문: 일본은 평화선 선언문에 다케시마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선언문에는 다케시마가 한국 영해 밖에 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평화선 선언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부속 문서이며, 강화조약에는 독도의 귀속 문제를 미결로 남겨 놓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04. 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입장과 반박할 근거



국제법적 근거

국제사법재판소 판결: 일본은 1951년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이며,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